

의안번호	2209594
의 퇴 인	김기현의원
회 답 일	2025.8.18.
추계번호	25B217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8조(기금의 설치 등)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3	안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재량규정
4	안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음(제1항)	
5	안 제14조(기념우표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발행)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6	안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7	안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제1항)	
8	안 제23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24조(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25조(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35조(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국가는 도심 속 정원을 기반으로 음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이하 “치유의 전당”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에 설립·운영함(제1항) 산림청장은 치유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및 사후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총사업비 483.2억원: 국비 96.6억원, 지방비 241.6억원, 수입금 145억원)을 통해 제정안 해당 조문과 관련된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 관련 사업명 : (세부사업) 정원조성관리 (1943-300) — (내역사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참고자료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참고자료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 산정 내역
2	안 제8조(기금의 설치 등)		
4	안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5	안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6	안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9	안 제24조(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10	안 제25조(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23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3	안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7	안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35조(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2. 상세 사유

□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0조) 및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안 제26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20조)으로, 제정안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감면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감면될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안 제35조)

- 제정안은 국가가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이하 “치유의 전당”)을 울산광역시에 설립·운영하고, 산림청장은 치유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유의 전당의 설립·운영 및 정원·음악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치유의 전당의 설립·운영 및 정원·음악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제정안에서 관련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울산광역시는 남구 삼산동 8-22번지 일원 삼산·여천 매립장 부지(50,000m²)에 치유의 전당 건립을 추진 중이나,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과 관련된 세부 조성계획 등은 확정되지 아니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자료: 산림청)

□ 박람회 개요

- (개최시기) 2028. 4. 22.(토) ~ 10. 22.(일) / 6개월
- (장 소)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태화강 일원
- (주 제) 정원의 유토피아, 지구의 요람
- (참가규모) 31개국, 관람객 1,300만명(내국인 1,235만명, 외국인 65만명)
- (주 최) 산림청, 울산광역시
- (총사업비) 483.2억원(국비 96.6억원, 시비 241.6억원, 자체수익 145.0억원)

□ 연차별 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5	2026	2027	2028
계	48,320	1,500	15,412	19,908	11,500
국 비(20%)	9,664	1,000	3,832	3,832	1,000
지방비(50%)	24,160	500	11,580	11,580	500
수입금(30%)	14,496	0	0	4,496	10,000

□ 2025년 추진계획

- (박람회 종합실행계획용역) '25. 3. ~ '25.12.
- (박람회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 4. ~ '26. 4.

□ 조성사업 추진계획(2026~2027년)

- (사 업 명)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공사 ※ 계속비 사업
- (대 상 지) 국가정원(84만㎡), 삼산·여천매립장(35만㎡) 일원
- (기 간) '26. 5. ~ '27. 12.
- (사 업 비) 37,845백만원(국비 8,664, 시비 23,660, 수입금 5,521)
※ 시설비 : 39,345백만원(설계비 1,500백만원, 공사비 37,845백만원)
- (주요내용) 국가정원 리모델링, 매립장 정원화 사업 등
- (추진사항) 실시설계용역중('26. 4월 완료)
- (향후계획) 착공('26. 5월), 준공('27. 12월)

□ 박람회 배치도



[참고자료 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 산정내역

구 분		사업비(천원)	제정안 관련 조문
시설비	계	39,345,000	안 24조(박람회 관련시설 지원)
메인퍼포먼스필드 (태화강국가정원)	소계	4,152,000	
	클라우드서클마운딩	336,000	
	가든프라자(축제마당)	1,365,000	
	꽃요광장	2,451,000	
메모리얼가든필드 (매립장)	소계	35,193,000	
	국제정원전시	6,911,000	
	기업정원전시	2,668,000	
	주제정원(기후)전시	2,597,000	
	세계정원전시	7,047,000	
	한국정원	2,744,000	
	탄소저감숲	2,356,000	
	테마숲	386,000	
	초지정원	2,071,000	
	진입광장1	1,633,000	
	산책로및기타부대시설	6,780,000	
운영비	계	8,975,000	안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행사운영비	소계	3,800,000	
	운영인력교육등	551,000	
	전시회장운영관리	2,754,000	안 제7조(대테러, 안전대책)
	인쇄비등	84,000	안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안 제14조(기념우표의 발행)
	행사인력인건비등	213,000	
	기타운영경비등	198,000	안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공연체협	소계	2,924,000	
	공식행사	564,000	
	공모행사외	200,000	
	B2B프로그램등	1,473,000	
	프로그램등	687,000	
홍보및마케팅	소계	1,164,000	
	방송사협력	459,000	
	인쇄매체광고	108,000	
	온라인홍보	177,000	
	해외홍보	183,000	
	홍보이벤트	147,000	
	현장홍보물	90,000	
유치활동		594,000	
예비비		493,000	안 제25조(박람회 사후 활용)
계		48,320,000	

주. 박람회장 조성사업 실시절계 용역 중으로 사업내용 변경 가능.

자료: 산림청